

중국 진출기업 세무 리스크 동향 및 시사점

2006. 5.

kotra 동북아팀

I. 중국의 세제 시스템과 세수 현황

1. 중국의 현행 세제시스템
2. 2005년 중국의 세수 현황 및 특징

II. 중국진출기업 세무 리스크 동향

1. 이전가격(轉讓定價)세제
2. 기업소득세
3. 개인소득세
4. 증치세(增值稅)
5. 세무조사

III. 시사점

1. 중국의 세제 정책 및 시스템 변화 이해
2. 세무리스크 점검을 통한 대응책 마련

【내용 요약】

I. 중국의 세제 시스템과 세수 현황

- ☐ 1994년 공상세제(工商稅制)개혁에 따라 개편된 23개 세제는 2006년 2월 27일 농업세류 및 도축세를 폐지함에 따라 20개 세제로 감소 (중국세무총국 분류기준)
- ☐ 현행 세제는 그 특성 및 작용에 따라 유전세류(流轉稅類), 소득세류, 자원세류, 특정목적세류, 재산 및 행위세류, 농업세류(2006년 2월 17일 폐지), 관세 등으로 분류
- ☐ 급속한 경제 성장 및 무역액 증가를 배경으로 중국의 2005년 세수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한 3조 866억위안을 기록하여 10여년 전보다 5.2배 늘어남
 - 국내증치세(중국내에서 물품 및 서비스 거래시 부과되는 세금), 영업세, 기업소득세 등 주요 세수액과 세관의 수입관세 총액을 중국의 관련 경제지표와 대비 분석해 보면, 세수증가와 경제발전 추이는 기본적으로 일치
- ☐ 유전세(流轉稅), 소득세의 세수 증대에 대한 공헌율이 각각 49.5%와 34.8%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중국의 세수액은 간접세가 많은 것이 특징으로 직접세 비중은 전체 세수액의 30%에 그치고 있음
 -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현재 낮은 비율의 직접세 세수 확대 방안책의 하나로 개인소득세 및 기업소득세 징수를 강화할 예정

II. 중국진출기업 세무 리스크 동향

- ☐ 이전가격은 외국의 모회사와 중국의 자회사 같은 특수관계자간의 특수한 관계를 이용하여 양자간의 거래가격을 조작하여, 결과적으로 중국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이는 것을 의미함

- 이전가격에 대한 조사는 1990년부터 가공무역기업이 많이 진출한 광둥성 선전(深圳) 등지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음
- 1991년부터 2003년까지 1만 개사 이상의 외자계기업에 대한 이전가격 조사를 했으며 추정과세액은 21억위안에 달하고 있음
- 한국의 중국투자기업 중 상당수 기업이 국내의 모기업(관련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어 이전가격과세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큼
- 중국 국가세무총국이 2004년 6월 지방세무기관에 외자기업에 대한 세무관리 강화 통지 시달, 10월에는 『관련기업간 업무 거래세무관리 규정(關聯企業間業務往來稅務管理規定)』을 개정함에 따라 향후 이전가격조사가 강화될 것으로 보임
- 중국 세무당국은 서면조사 뿐만 아니라 현장실사나 추가자료 제출 등 돌발적인 조사도 하고 있음
- 자료제출 기한이 단기적이고 기업에 입증책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조사통보를 받고 나면 모기업과 협의하여 대응책 마련에 만반의 준비를 기해야 함
- 기업소득세는 현재 중국기업에 대해 33%, 외국인투자기업은 경제특구 15%, 경제기술개발구 24%를 부과함
- 기업소득세 통일화 방안은 연내에 3차 심의를 거쳐, 2007년 전인대 개최기간중 표결에 부치고 빠르면 2008년에 실시 예상(예상세율 24~25%)
- 기업소득세가 통일화된다면 우대를 받고 있는 외자계기업의 세율은 실질적으로 높아질 것임. 이에 따라 우대세율 철폐가능성을 예측하여 기업 운영자금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새로 진출할 기업들은 세제우대 이점을 제외하고 중국진출 타당성 연구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임

□ 중국의 개인소득세는 소득의 분류를 10개 종류(임금, 급여소득, 노무 보수소득, 개인경영자의 경영소득, 원고료소득, 재산임대소득 등)로 분류되어 소득마다 세액을 계산해서 납부하는 방식을 채용하고 있음

- 기업소득세에서는 외자계기업 독자소득세법이 있지만 개인소득세에서는 외국인도 개인소득세법이 적용됨. 단지 외국인에 대한 기초공제액(월액)은 4,800위안이 인정되고 있음

□ 향후 외국인투자기업 종업원 등 고소득자에 대한 징수관리 강화

- 중국 국가세무총국 2004년 3월 『외국적인원의 개인소득세징수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加强外籍人员个人所得税征管工作的通知)』를 공고함. 이 통지는 2004년 6월까지 외국인이 자기신고에 의한 미 납세액을 납부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또한 2005년 10월부터 『개인소득세관리방법(个人所得税管理办法)』을 시행함. 동 방법에서는 세무당국이 생년월일이나 근무처 등 외국인의 개인정보를 파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 현지법인 파견자일 경우 중국 현지법인 뿐만 아니라 본사의 급여에도 개인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고, 또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되면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개인소득세법을 숙지하여 파견자의 소속을 정하는 것이 필요함

□ 중국의 증치세는 생산형 증치세임. 이는 재고자산에 대해서만 매입 공제를 인정하는 방식임

□ 반면, 재고자산 이외에 고정자산에 관한 증치세 공제도 인정하는 방식을 소비형 증치세라 함. 중국정부는 중국 동북지역의 노후공업지역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통한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2004년 9월 『동북지방에서의 증치세 공제 범위 확대에 관한 문제에 대한 규정(東北地區擴大增值稅抵口範圍若干問題的規定)』을 공표하여 정식 실시하고 있음

- 공제 대상업종 : 설비제조업, 석유화학공업, 야금업, 선박제조업, 자동차제조업, 농산물가공업, 군용품제조업, 첨단기술산업 등 8개 업종

□ 최근 수출증치세 환급 관련 통지 발표로 환급율 조정

- 2005년 발표된 환급율 조정내역을 보면 오염유발, 에너지 다소모형 제품은 수출증치세 환급 철폐하고, 집적회로, 이동통신기지국 등 첨단 관련제품의 환급율은 13%에서 17%로 상향 조정
- 2006년 1월 1일 부 콜타르, 생피, 생모피, WET BLUE, WET 가죽 등 제품은 수출증치세 환급 철폐
- 따라서 중국내 가공무역에 종사하는 투자기업들은 수출증치세율 인하로 인한 기업의 경영비용 증가를 예상하여 생산비용 절감 노력, 브랜드 이미지 제고 등 다방면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힐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중국정부는 중국내 · 외자기업이 세금탈루를 하고 있다고 판단, 향후 세무조사를 강화할 예정. 중국세무당국의 세무조사는 3단계로 실시됨

- 첫째, 일상조사로 이는 납세자의 세무신고상황에 따라 일상적으로 실시하는 조사임
- 둘째, 특정항목 조사로 이는 특정의 납세대상 · 업종 · 세목 등에 대해 실시한 전문적인 조사임
- 셋째, 고발조사로 고발자에게는 실제 추정세액의 5%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 적정한 세무신고가 최선의 세무조사 대응책이라 할 수 있음. 중국 진출 외국인투자기업들 중에는 세무신고 계산을 틀리게 하여 사후에 추정세금을 부과받는 경우가 많음

- 적절한 세무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내 세무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며, 중국 독자의 내부고발제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내의 기밀유지에 관한 체제 정비도 중요함. 필요에 따라서는 전문 회계 사무소로부터 매월 감사를 받는 등 컨설팅 회사로부터 시의적절하게 자문을 받는 것도 필요함

Ⅲ. 시사점

- 일반적으로 경제가 발전할수록 직접세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연 평균 9%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중국에서는 간접세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정책에 의한 경기진작효과가 적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중국은, 향후 직접세의 대표격인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법 개정과 징수강화를 통한 세수 확보로 효율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할 것으로 보여 중국의 세제시스템 및 환경변화 예의주시 필요
- 이전가격세제는 중국 내자기업에도 적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외국인투자기업을 타겟으로 실시하고 있어, 한국의 대중국 투자기업 중 상당수 기업이 모두 이전가격세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음
 - 이전가격세제는 기업이 소득을 해외에 이전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과세되고 중국 세무당국은 서면조사 뿐만 아니라 현장실사나 추가자료 제출 요구 등 돌발적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자간 거래를 하는 중국 진출 한국기업들은 이전가격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통일화된 기업소득세율은 2007년 전인대기간중에 표결에 부치고 빠르면 2008년에 실시 예상
 - 현지 투자기업들은 우대세율 철폐 가능성을 예측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새로 진출할 기업들은 세제 우대메리트를 제외하고 사업타당성을 조사해야 할 것임
 - 앞으로는 기업소득세 우대조치가 지역에서 산업별 우대조치로 전환될 것으로 보여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 중 '장려산업업종'으로 투자방향을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
- 개정 개인소득세법은 저소득층에 대한 세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고소득자에는 개인소득세 징수관리 목적을 갖고 있음

- 따라서 금융기관이나 첨단기술기업 등에 근무하는 고소득자 뿐만 아니라 개인소득세 중점관리 대상인 외국인투자기업 종업원의 개인소득세에 대한 과세산출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수출증치세 환급율 하향 조정은 현재 과열기조를 보이고 있는 거시경제를 조정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중국의 경제·산업동향변화에 따라 수출증치세 환급율이 탄력적으로 변경될 것으로 예측

- 수출증치세는 수출후 관련 증빙서를 세관에 제출하면 환급된다고 하지만 환급이 늦어지거나 또는 거의 환급을 받지 못하는 기업도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이에, 수출증치세 환급율 조정 추이를 주시하여 투자업종을 선정하고 상황에 따라 수출증치세 환급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기업의 운영자금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임

I 중국의 세제 시스템과 세수 현황

1. 중국의 현행 세제시스템

□ 중국은 1994년 공상세제(工商稅制) 개혁시 세제를 23개로 구분했으나 농민의 수입증대¹⁾를 통한 도·농간 소득격차 축소를 위해 2006년 2월 27일 농업세류 및 도축세를 폐지함에 따라 현재는 20개 세제로 개편됨²⁾

□ 현행 세제는 그 특성 및 작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됨

○ 유전세류(流轉稅流)

- 증치세, 소비세, 영업세 등이 속하며 생산, 유통 또는 서비스영역 중 납세인이 취득한 판매수입·영업수입에 징수함

○ 소득세류

- 기업소득세(국유기업, 집체기업, 사영기업, 연합기업, 주식제기업 등 중국 내자기업에 대한 부과하는 세금),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등이 속하며 주로 생산·경영자가 취득한 이윤 또는 개인이 취득한 수입에 징수함

○ 자원세류

- 자원세 및 도시토지사용세(城鎮土地使用稅) 등이 속하며 자원개발 및 도시의 토지를 사용하는 자에게 징수함

○ 특정목적세류

1) 2005년 중국정부는 三農(農民, 農業, 農村)에 전년보다 349억위안이 증가한 2,975억위안을 재정 지원함

2) 1994년 1월 30일 공표한 『국무원의 농업 특산수입에 대한 대한 농업세 징수에 관한 규정(國務院關於對農業特產收入徵收農業稅的規定)』과 1950년 12월 15일 공표한 『도축세감정조례(屠宰稅暫行條例)』를 2006년 2월 17일부터 폐지함.

- 도시유지보호건설세(城市維護建設稅), 경지점유세(耕地佔用稅), 고정자산 투자방향조절세(固定資產投資方向調節稅), 토지증치세 등이 있으며, 이는 특정목적 달성을 위해 특정 대상과 특정행위에 징수하는 세제임

○ 재산 및 행위세류

- 부동산세(房山稅), 도시부동산세(城市房產稅), 차량사용세, 차량·선박사용면허세, 인지세(印花稅), 도축세(2006년 2월 27일부 폐지), 계세(契稅) 등

○ 농업세류(2006년 2월 17일 폐지)

- 농업세, 목축업세 등을 말하며 주로 농업 및 목축업 수입을 획득한 단위 및 개인에 적용

○ 관세

- 수출입 화물 및 물품에 징수.

□ 상기 세제 중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는 국가 법률 형식으로 공표해 실시하고, 다른 각종 세제는 모두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입법을 거쳐 국무원이 잠정조례 형식으로 공표 실시함

- 20개 세수 법률·법규는 중국의 세수실체법(稅收實體法)체계를 구성하고 있음
- 세수실체법(稅收實體法)이외에 중국의 세수징수관리 활용에 대한 법률 제도는 세수관리기관에 따라 각각 규정하고 있음
- 세무기관의 징수관리는 전국인민대회 상무위원회가 공표 실시하고 있는 『세수징수관리법(中華人民共和國稅收徵收管理法)』에 따라 집행함
- 세관이 징수하는 세제는 『세관법(中華人民共和國海關法)』 및 『수출입 관세조례(中華人民共和國輸出入關稅條例)』 등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함

<중국의 주요 세제 일람표>

세 류	번 호	종류	세율	주요 징수범위	징수기관		세수 귀속		관련법률
					국 세	지 방 세	중 앙	지 방	
流 轉 稅	1	증치세	0%,13%,17%	판매, 수입화물, 가공, 수리보수용역	√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잠정조례 및 실시세칙
	2	소비세	1)定率징수 2)定額징수	-담배, 백주,기타 주 류, 주정, 화장품,피 부·모발보호제품, 귀금속,화약,자동차 타이어,오토바이,소 형자동차 -황주, 맥주, 휘발 유, 경유	√		100%	√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세잠정조례 및 실시세칙
	3	영업세	3%, 5%, 5~20%	서비스업	√	√	√	√	중화인민공화국 영업세잠정조례 및 실시세칙
所 得 稅	4	기업소 득세	33%	중국내 원천소득	√	√	√	√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잠정 조례 및 실시세 칙
	5	외국인 투자기 업, 외국 기업소 득세	10%,15%, 20%,24%, 33%	외국인투자기업 중 국내외 소득, 외국 기업 중국내 소득	√		√	√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소 득세법 및 실시 세칙
	6	개인소 득세	1)9급초과누 진: 5~45% 2)5급초과누 진: 5~35% 3) 20%	1)급여소득 2)생산경영, 도급· 청부경영소득 3)기타소득		√		100%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 및 기타 실시세칙

세 류	번 호	종류	세율	주요 징수범위	징수기관		세수 귀속		관련법률
					국 세	지 방 세	중 앙	지 방	
자 원 세 류	7	자원세	정액징수	6류 광산자원 및 소금	✓	✓	✓	✓	중화인민공화국 자원세잠정조례 및 실시세칙
	8	도시 토지 사용세	정액 징수 0.2~10위안/ m ²	시,현,급의 토지 사용시		✓		100%	중화인민공화국 도시토지사용세 잠정조례
특 정 목 적 세	9	도 시 유 지 보 호 건설세	1%, 5%, 7%	세액은 증치세, 소 비세, 영업세액에 기초하여 산출	✓	✓	✓	✓	중화인민공화국 도시유지보호건 설 세 잠 정 조 례 및 실시세칙
	10	경 지 점 유세	정액 징수 1~10 위 안 / m ²	경지점유주택 및 기타 비농업용 건 설		✓		100%	중화인민공화국 경지점유세잠정 조례
	11	고 정 자 산 투 자 방 향 조 절세	0%,5%,10%, 15%,30%	각종 고정자산투자		✓		100%	중화인민공화국 고정자산투자방 향조절세잠정조 례 및 실시세칙
	12	토 지 증 치세	4급초율누진	양도 부 동 산 취 득 에 따른 부가가치액					중화인민공화국토 지증치세잠정조례 및 실시세칙
재 산 세 류	13	방산세 (부동산 세)	1.2%,12%①	도시,현급, 진, 공업 광산지역 부동산		✓		100%	중화인민공화국 방산세잠정조례
	14	도 시 부 동산세	1.2%,18%②	외국인투자기업,외 국기업 및 외국적 인원의 부동산에 대해 징수		✓		100%	도시부동산세잠 정조례
	15	차 량 선 박 사 용 세	정액징수	중국내 사용 각종 차량		✓		100%	중화인민공화국 차량선박사용세 잠정조례
	16	차 량 · 선 박 사 용 번 호 판세	정액징수	외국인투자기업, 외 국기업 및 외국적 인원의 차량 · 선박 에 대해 징수		✓		100%	차량 · 선박사용 번호판세잠정조 례

稅類	번호	稅種	세율	주요 징수범위	징수기관		세수 귀속		관련법률
					국세	지방세	중앙	지방	
행위세류	17	인화세 (印花稅; 인지세)	1)비례세율 : 0.05%~1% 2)건당 인지세 1위엔/건, 5위엔.건	1)11류 계약서 및 자금 장부 2)장부,권리,허가증서 및 재산임대차 계약서	√	√	√	√	중화인민공화국 인화세징정조례
	18	계세 (契稅)	3~5%	중국내 토지, 부동산 권리이전시		√		100%	계세징정조례
	19	연석세 (筵席稅)	15%~20%	호텔, 음식점 등 요식업장소에서 개최되는 연회시 징수		√		100%	중화인민공화국 연석세징정조례
관세	20	관세	0-270%	수출입화물 및 서비스	세관		100%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및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관세조례

자료원 : 중국세무총국

주 : ①은 부동산 잔여가치에 따라 산출, 납세세율은 1.2%, 부동산임대료 수입에 따라 산출, 납세세율은 12%임

② 1.2% 세율은 기준주택 가격에 따라 연간 징수하는 부동산세, 18%는 기준주택 임대료에 따라 연간 징수하는 부동산세

2. 2005년 중국의 세수 현황 및 특징

□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2005년 세수액 10년 전보다 5.2배 확대

- 급속한 경제 성장 및 무역액 증가를 배경으로 2005년 중국의 세수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한 3조 866억위안(관세 및 농업세수 불포함)을 기록하여 10여년 전보다 5.2배 늘어남
- 분기별로는 1/4분기 20.4%, 2/4분기 22.9%, 3/4분기 17.8% 그리고 4/4분기 18.7% 증가. 월 세수액이 평균 2,000억위안 이상 달하여 세수액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국내증치세³⁾, 영업세, 기업소득세 등 주요 세수액과 세관의 수입관세 총액을 중국의 관련 경제지표와 대비 분석해 보면, 세수 증가와 경제발전추이는 기본적으로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유전세(流轉稅), 소득세가 세수 증대의 주체

- 유전세와 소득세가 세수 수입에 대한 공헌율이 매우 높음
 - 2005년 국내증치세, 소비세, 영업세 등 유전세 수입이 총 1조 6,564억위안으로 전년대비 18.2%(2,547억위안)증가하여 세수증대의 공헌율은 49.5%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 내·외자기업소득세와 개인소득세가 총 7,605억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9%(1,793억위안)가 증가함. 양 소득세의 세수 증대에 대한 공헌율은 34.8%로 전년보다 9.2%p 증가함

□ 동부지역의 세수수입이 중국의 70.7% 차지, 세수 증가속도는 중서부지역이 동부지역보다 빨라

- 2005년 동부지역 세수수입은 2억 1,834억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19.2%

3) 중국내에서 물품 및 서비스 거래시 부과되는 세금

증가, 전국 세수의 70.7%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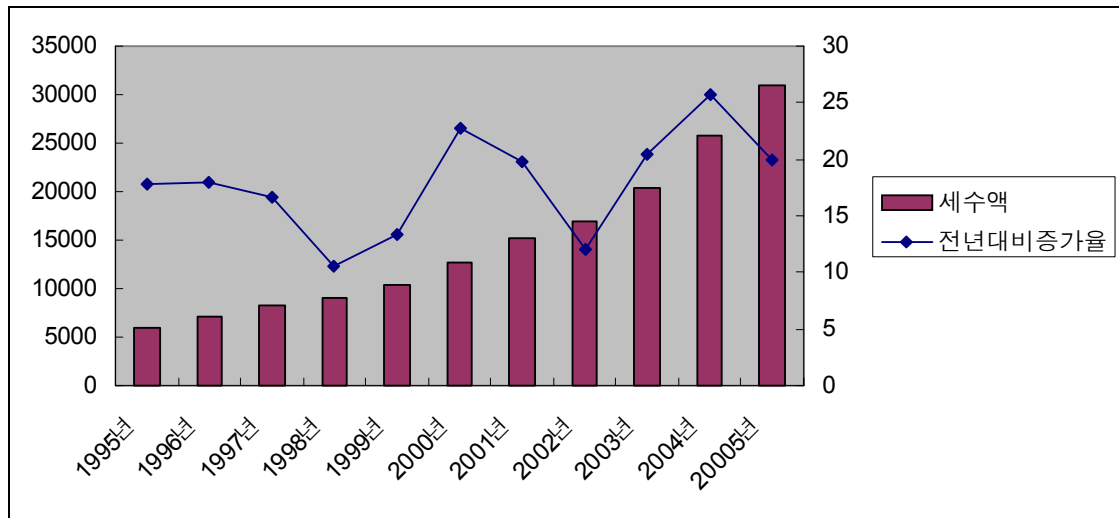
- 중부지역 세수는 4,817억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22.4% 증가, 중국 세수의 15.6% 차지함
- 서부지역 세수는 4,215억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21.7% 증가, 중국 세수의 13.7% 차지함
- 그러나, 중·서부의 세수증가속도는 동부지역보다 각각 3.2%p, 2.5%p 빠른 것으로 나타남
- 중·서부의 중국 세수 비중은 전년동기 대비 0.3%p, 0.2%p 증가

□ 직접세의 비율이 30% 정도에 그침

- 중국의 세수액은 간접세가 많은 것이 특징임. 직접세 비중은 전체 세수의 30%에 그치고 있음. 일반적으로 경제발전에 따라 직접세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지만 중국에서는 아직 직접세의 비중이 낮음
- 결과적으로 직접세 비중이 낮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정책에 의한 경기진작의 효과가 적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한국의 직접세 비중은 43%, 일본은 60%, 미국은 90% 정도임
- 한편, 직접세에서는 개인소득세, 기업소득세의 세수액이 증가하고 있지 그 비중은 각각 6.8%, 15.8%(2004년 기준)에 지나지 않아 중국 정부는 향후 직접세 비중을 증가시킬 계획임

<중국 세수액의 추이>

(단위 : 억위안, %)



자료원 : 중국세무총국(www.chinatax.gov.cn)

<세목별 세수액>

(단위 : 억위안, %)

구 분	1995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비중
증치세	3,039	6,149	7,091	8,141	10,096	12,589	49.0
- 국내증치세	2,654	4,668	5,453	6,275	7,341	8,930	34.7
- 수입화물증치세	385	1,482	1,638	1,866	2,755	3,659	14.2
소비세	566	877	946	1,073	1,222	1,551	6.0
영업세	869	1,886	2,085	2,468	2,869	3,584	13.9
기업소득세	753	1,445	2,122	1,973	2,342	3,142	12.2
외자기업소득세	74	326	513	616	705	933	3.6
개인소득세	132	660	996	1,211	1,417	1,737	6.8
도시유지건설세	212	352	384	471	550	674	2.6
부동산세	82	210	229	282	324	366	1.4
인지세	47	522	337	179	215	290	1.1
차량구입세	-	-	255	364	474	534	2.1
수출화물환급세액	▲549	▲810	▲1,072	▲1,259	▲2,039	▲2,196	-
총 세수액	5,974	12,666	15,166	16,997	20,466	25,718	-

자료원 : 상동

주 : 2004년 수출화물환급세액은 당해연도 발생분만 포함(이전년도 미환급세액은 포함시키지 않음)

II. 중국진출기업 세무 리스크 동향

1. 이전가격(轉讓定價)세제

□ 이전가격세제 개요 및 조사 현황

- 이전가격은 외국의 모회사와 중국의 자회사 같은 특수관계자간에 특수한 관계를 이용하여 양자간의 거래가격을 조작하여, 결과적으로 중국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이는 것을 의미함
- 이전가격세제는 현지 진출기업의 소득의 해외이전을 방지할 목적으로 이전가격을 통상적인 거래가격(독립기업간 가격)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세제를 말함
- 중국은 1998년 『이전가격에 관한 통지』를 공표했지만, 실제 이전가격 조사는 1990년부터 가공무역기업이 많이 진출한 광둥성 선전(深圳)⁴⁾ 등지에서 이미 실시됐음
 - . 이 때문에 화난지역(華南地域)에 진출한 대형 외국계기업 대부분이 이미 이전가격세제에 의한 추징과세를 받은 것으로 전해짐
 - . 최근에는 화난지역뿐만 아니라 전문 세무조사관들이 각지역에 배치되어 전국적으로 이전가격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 1991년부터 2003년까지 1만 개사 이상의 외자계기업에 대한 이전가격 조사를 했으며 추징과세액은 21억위안에 달하고 있음
- 중국에서의 이전가격세제는 국외의 관련자간 거래뿐만 아니라 중국 국내에서의 관련자간 거래에도 적용하고 있어 대부분의 중국기업도 조사 대상리스트에 포함됨. 그러나 실제 외국계기업에 대한 조사가 훨씬 많은 편임

4) 『深圳經濟特區外商投資企業與關聯公司交易業務稅務管理的暫行辦法』에 기초 이전가격조사 실시기초

☐ 이전가격조사 대상기업

- 중국 세무당국은 기업이 제출한 ‘관련기업간 거래연도신고표(關聯企業間業務往來年度申報表)’에 근거하여 기초적인 분석을 한 후 중점 조사 대상기업을 선정함. 일반적으로 해외에 모기업이 있는 수출가공형기업이 조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음
- 한국의 중국투자기업 중 상당수 기업이 국내의 모기업(관련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어 이전가격과세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큼
- 특히 ‘관련기업과 거래시 특별한 이유없이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하거나’, ‘높은 이자율로 모기업에서 자금을 차입하는 투자법인’ 등은 이전가격세제 관련 조사를 받을 수 있음

<이전가격조사 대상기업의 선정기준>

① 관련기업(해외 모기업)과 거래금액이 큰 기업
② 생산·경영관리상의 결정에 관련기업의 지배를 받는 기업
③ 장기간 결손을 계상한 기업(2년 이상 연속)
④ 장기간, 소액 이익·결손을 내면서 경영규모를 확대하고 있는 기업
⑤ 손익 변동폭이 큰 기업
⑥ 조세회피지에 있는 관련기업과 거래가 있는 기업
⑦ 동업종 타사보다 이익수준이 낮은 기업
⑧ 기업내에서 이익률이 낮은 기업
⑨ 관련기업에 불합리한 비용을 지출하는 기업
⑩ 규정의 감면세기간 종료후에 대폭 이익이 감소한 기업, 기타 조세회피 의심이 가는 기업

자료원 : 『관련기업간거래세무관리규정(關聯企業間業務往來稅務管理規程暫行)』
(국가세무총국 1998년)

☐ 이전가격조사 강화 배경

- 중국 세무당국이 이전가격조사를 강화하는 배경에는 다음 3가지 점이 작용하고 있음

- 첫째, 세수확보 차원을 들 수 있음. 즉 국유기업 개혁과 은행의 불량채권 처리, 인프라정비 등으로 재정지출이 확대되고 있으나, 分稅制(국가·지방세무국으로 稅收배분)에 따른 중앙정부 재원 축소 등의 요인으로 정부재정 사정이 악화되었다고 판단하고 세원보충을 위해 외자계기업의 이전가격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게 된 것임
- . 즉, 중국의 재정지출 확대로 재정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재정의 국채 의존도(국채/재정지출)가 1990년대 후반에 이미 20% 초과하여 징세 강화 노력의 일환으로 이전가격세제 강화
- 둘째, 외자계기업의 탈세 누락에 대한 불만이 작용한 것임. 국가세무당국과 중국세무잡지사가 2005년 9월에 발표한 2004년 기업 납세액 순위를 보면, 상장기업 100대 기업(전년대비 40.2% 증가), 사영기업 100대 기업(전년대비 25.5%)의 납세액은 급증한 반면, 외자계기업의 100대 기업의 납세액은 전년대비 0.02% 증가한 것에 그친 것으로 나타남
- . 이 자료를 기초로 세무당국은 외자계기업이 원래 중국에 신고해야 하는 과세소득을 해외에 이전시키다는 주장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음
- . 국가세무당국은 자동차 제조업체를 비롯한 다국적기업의 과세소득의 이전에 의한 세수 손실은 매년 300억위안을 초과하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 . 향후 중국 정부는 기업소득세의 통일화로 인한 외자계기업의 실질적인 세율 상승이 중국 진출기업의 해외 모기업으로의 이익이전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세무조사를 가일층 강화 예상
- . 또 종래는 현급 이상의 세무국에서 이전가격조사를 했지만 개정에 따라 시급(市級) 이상의 세무국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책임을 부여하는 등 이전가격조사 권한을 격상시켰으며 국가세무국총국은 2005년 7월 조세회피행위 의심이 가는 기업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하도록 지방세무당국에 통지를 함.

- 이외에 거래가격의 타당성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도록 한 ‘문서의 무화’를 법제화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음. 초안은 이미 작성되었으며 2006년 중에 법령이 발표될 것으로 보임

<이전가격 이용 주요 탈세방법>

- ☞ 모기업으로부터 수입하는 원자재, 기계설비 구매가격을 높게 설정하고 모기업으로의 완제품 수출가격을 낮게 설정하여 모기업으로 이전
- ☞ 투자시 자기자본을 최소화하고 높은 금리조건의 모기업 차입을 늘림으로서 중국법인의 이익규모를 축소
- ☞ 모기업에 대한 기술지원비용, 로열티 등을 높게 설정하여 이익을 모기업으로 이전

주 : 중국세무당국 추정

- 셋째, 많은 외자계기업이 적자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자칫하면 대 중국 투자가 이익을 계상하지 못한다는 인상을 해외에 줄 수 있다는 점
- 중국 세무총국 발표에 의하면 중국에 진출한 약 46만 여개의 외국인 투자기업 중 2003년 말 현재 결손기업비율이 50%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중국 정부는 결손기업의 약 2/3는 결손원인이 이전가격 조작에 따른 조세회피에 기인하는 것으로 연간 약 300억위안에 달하는 세수가 탈루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
- 결국, 이전가격세제에 의해 소득을 바로잡아 흑자기업을 늘리고, 대중국 투자의 매력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등, 새로운 외자유치 방법을 모색하고 있음

□ 이전가격조사 순서

- 조사대상을 선정한 후 조사인원은 실제조사 전에 기업 및 그 특수관계 기업의 직능 또는 기능에 대해 종합 분석하고 이를 통해 피조사기업의 생산경영활동내용, 방식, 수입의 확정, 채무결산, 가격결정방법, 납세상황을 파악함
- 세무조사 과정 중 세무기관은 아래의 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분석함
 - 이윤(결손액) 및 투자 또는 매출이익(손실)률
 - 매출수입의 안정성
 - 원가 및 비용지출의 합리성
 - 차입자금의 이자율 수준
 - 유무형자산의 양도가격 및 사용료의 합리성 등
- 서면조사 완료 후 세무기관은 기업에 대해 현장 실사를 하게 됨. 현장 실사는 조사인원이 기업이 신고한 자료와 비용표준자료 등 서면조사시 정확하게 조사할 수 없는 문제점에 대해 직접 현장을 조사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으로 기업관리부문, 차고, 창고에 대해 실사를 하고 장부, 증빙, 매매계약 등의 관련자료에 대해 조사함
- 이전가격조사는 일반적으로 1년 이상의 시간동안 이루어지며, 방대한 양의 자료와 서류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준비가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일단 세무당국으로부터 과세소득을 줄였다고 의심을 받으면 세무당국은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또 해당기업에 실사를 실시하기도 함
 - 중국의 『이전가격관리규정』에서는 당국으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구받으면 60일 이내 제출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 이전가격에 관한 조사는 3년 이내에 종료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5년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있으며, 중국 세무당국과의 절충작업이 장기전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음

□ 이전가격조사 결과에 따른 세금 추정

- 이전가격세제는 기업이 소득을 해외에 이전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과세되기 때문에 관련자간 거래를 하는 한국 진출기업은 이전가격 리스크를 충분히 인식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의 이전가격세제는 최장 5년 전부터 소급해서 적용됨. 이 때문에 수 년간의 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경우가 많고, 연체금까지 가중된다면 부담이 큼

□ 이전가격조사에 대비한 사전준비

-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2004년 6월 지방 세무기관에 외자기업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하라는 통지를 시달렸으며 10월에는 『관련기업간 업무거래세무관리규정(關聯企業間業務往來稅務管理規定)』을 개정함
 - 이 규정에는 이전가격조사 대상기업 기준을 정해 놓고 있고 여기서 선정된 조사대상기업의 30% 이상에 대해 이전가격을 조사할 것으로 되어 있음.
- 중국 세무당국은 서면조사 뿐만 아니라 현장실사나 추가자료 제출 요구 등 돌발적인 조사도 실시하고 있음. 입증 책임은 기업측에 있기 때문에 추정과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가격을 조작해서 이익을 이전하지 않는 것을 입증, 세무당국을 납득시켜야 함. 또 추가자료는 60일 이내에 제출할 것을 의무화하는 등 시간적인 제약도 있음
- 자료제출 기한이 단기간이고 기업에 입증책임이 있기 때문에 조사대상 기업으로 일단 조사통보를 받고 대응하면 시기를 놓치기 쉬우므로 미리 이전가격조사를 대비하여 모기업과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대응책을 철저히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이전가격조사 사전 대비책>

- 모기업-중국자회사간 거래가격의 적정성 여부 사전 평가
- 동종 타사의 이익수준 정보 입수 등 벤치마킹 작업
- 모기업 주도하에 중국내 자회사 전체를 대상으로 대응전략 수립
- 관련기업간 가격리스트 합의서의 사전 작성
- 로얄티 등 모기업에 대한 지불금액의 객관적인 입증 자료 마련
- 세무당국과의 양호한 관계 구축
- 세무전문가의 자문 활용
- 사전가격합의제도(Advance Pricing Agreement, 이하 APA)신청 검토

<사전가격합의제도(APA)>

- ☞ 사전가격합의제도(APA)는 해당기업과 모기업간 거래에 있어 과세당국과 납세자간 사전에 이전가격 원칙과 계산방법에 대해 협의서를 체결하여, 기업이 이전가격조사에 대한 우려를 덜고 예측 가능한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
- ☞ 국가세무총국은 2004년 9월에 『관련기업간거래사전확인실시세칙(关联企业间业务往来预约定价实施规则)』를 공표, APA 신청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음
- ☞ APA는 기존의 소모적이며 대립적인 양상으로 전개되는 과세당국의 이전가격조사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식과는 달리 상호 협력적인 방식으로 현재 또는 잠재적인 이전가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돼 있음
- ☞ APA에는 Uni-lateral과 Bi-lateral/Multi-lateral 등 2종류가 있는데 전자는 중국에서만 인정받을 수 있어 중국 국내에서의 이전가격과 세무리스크를 피할 수 있음. 후자는 중국 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의 세무당국으로부터 인증을 받아 여러 국가에서 이전가격과세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음. 현재 중국에서는 이미 150여 건 정도의 Uni-lateral APA가 체결되어 있음
- ☞ APA는 이전가격과세 리스크를 회피하는 수단이지만 APA 체결에는 비용이나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자사의 거래자간 거래 현황을 분석하여 APA 체결에 관한 비용, 시간 등을 고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이외에 중국에 복수의 거점을 두고 있는 기업은 그 중 1개사 조사대상이 된다면 전 거점으로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본사를 포함한 대응책을 준비하는 것이 요망됨
- 이전가격정책 작성 및 문서화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감. 중국에서는 獨立價格比準法(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Method), 再販賣價格基準法(Resale Price Method), 原價基準法(Cost Plus Method) 등 기준 3법을 비롯해 OECD 가이드라인에 의거한 이전가격의 산정방법을 인가하고 있음

2. 기업소득세

□ 현행 우대세제

- 외자계기업의 기업소득세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소득세법』 및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소득세법 실시세칙』에 규정되어 있음
- 기업소득세율은 중국기업과 똑같이 통상 33%(국세 30%, 지방세 3%)임. 그러나 경제특구, 경제기술개발구 등지에 진출한 기업이나 수출형기업과 선진기술기업은 15% 또는 24%의 우대세율이 적용됨
 - 경제특구⁵⁾ : 15%
 - 경제기술개발구⁶⁾ : 24%
- 현행 외자기업소득세의 평균 실제부담세율은 14%, 중국 내자기업의 세율은 24%, 국유대형기업 및 국유중형기업은 약 30%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5) 선전(深圳), 주하이(珠海), 샤먼(廈門), 산터우(汕頭), 하이난(海南)

6) 다롄(大連), 톈진(天津), 옌타이(煙台), 칭다오(靑島), 쑤원강(連雲港), 난통(南通), 민항(閔港), 차오허징(漕河涇), 홍차오(虹橋), 푸저우(福州), 광저우(廣州), 간장(湛江), 하얼빈, 창춘(長春), 선양(瀋陽), 잉커우(營口), 웨이하이(威海), 쿤산(昆山), 항저우(杭州), 샤오산(蕭山), 온저우(溫州), 푸청룽차오(福清融僑), 둥산(東山), 후이저우다이아완(惠州大亞灣), 광저우난사(廣州南沙), 우후(蕪湖), 우한(武漢), 충칭(重慶), 베이징(北京), 우루무치, 하이난양푸(海南洋浦)

- 이외에 생산형 외자계기업은 정관 상의 경영기간이 10년을 초과한다면 2면 3감(이익계상연도 이후 기업소득세를 2년간은 면세, 3년간은 50% 면세 조치)하는 면·감세 조치를 적용받고 있음

□ 기업소득세 통일화 배경

- 중국은 1994년 세제 개혁을 계기로 증치세, 소비세, 영업세, 소득세 등의 세수가 증가하면서 월 평균 2,000억 위안의 세수를 거둬들이는 등 재정수입 역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들어 재정투입도가 큰 서부대개발, 동북진흥계획, 남수북조(南水北調)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시설 프로젝트와 국유대기업의 정비, 금융권의 채무정리 등이 진행되면서 매년 2~3천 위안에 달하는 재정적자가 발생하고 있음
- 현재 이러한 적자부분은 주로 국채로 상당부분을 메워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세원의 개발과 기존의 징세 시스템을 강화하여 세수를 증대시키는 방식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정부는 중국 수출의 50% 이상⁷⁾을 점유할 정도로 경제규모가 확대된 외자기업(실제 운영되는 기업은 약 30만개)으로부터의 세수 확보가 중국의 재정적자 손실을 메우는데 일조를 할 것으로 판단하게 됨
- 결국 중국의 기업소득세 내외자 기업의 통일화는 중국 자체의 세제개혁(정비) 필요성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보다 확실한 세원 확보와 중국기업들의 잠재된 불만을 해소하려는 포석으로 볼 수 있음

□ 신 기업소득세법 시행시기

7) 외자 기업이 중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1년 50%에서 2002년 52%, 2003년 56%, 2004년 58%로 계속 높아지고 있음

- 기업소득세 통일화 방안은 2005년 12월 제10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40차 위원회, 2006년 입법계획에서 통과 후 2006년 1차 심의 법률 초안에 포함시킴
-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계획에 따라 기업소득세는 연내에 3차 심의를 거쳐, 2007년 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 : 全人大,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 政協) 개최기간중 표결에 부치고 빠르면 2008년에 실시 예상
- 한편, 중국정부의 세율 단일화 법안은 2008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며 통일된 기업소득세율은 24~25%선이 될 것으로 전망됨

□ 기업소득세 통일화 영향 전망 및 대응

- 기업소득세 통일화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우대조치가 없어지면 인도나 베트남 등지로 외자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외국인투자 유치 담당 부서인 중국 상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음
- 반면, “최근 수년간 중국보다 노동비용이 낮은 동남아시아 국가도 외자 유치를 전개하고 있지만, 중국에 대한 투자는 증가하고 있음. 이는 중국 내수시장 개척을 위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결국 우대조치가 철폐된다 하더라도 외자유입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다”는 이견도 있음
- 기업소득세의 통일화에 대한 중국에서의 의견이 분분한 것은 중국정부가 기업소득세의 통일화에 관한 초안을 지방정부에 제시했으나 각 지역으로부터 수정 의견이 잇달아 10회 이상을 수정하고 있다는 것에서 알 수 있음. 이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우대를 통한 외자계기업의 유치가 절실한 지방정부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임
- 그러나 중국정부가 빠르면 2008년도에 통일화된 ‘신 기업소득세법’을 시행할 것을 천명함에 따라 중국 진출기업 및 투자계획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중국 세제개혁의 방향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효과적인 대처방안을 마련 필요함

- 즉 기업소득세가 통일화된다면 우대를 받고 있는 외자계기업의 세율은 실질적으로 높아질 것임. 우대세율 철폐 가능성을 예측하여 기업 운영 자금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새로 진출할 기업들은 세제우대 이점을 제외하고 중국 진출 타당성 연구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임

3. 개인소득세

☐ 개인소득세 개요

- 외국인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중국인과 똑같이 『개인소득세법』 및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에 따라 규정되고 있음
- 중국의 개인소득세는 소득의 분류를 10개 종류(임금, 급여소득, 노무보수소득, 개인경영자의 경영소득, 원고료소득, 재산임대소득 등)로 분류되어 소득마다 세액을 계산해서 납부하는 방식을 채용하고 있음.
- . 예를 들면, 급여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에서는 과세소득을 9단계로 나뉘 5~45%까지 누진과세에 의한 세율이 적용됨
- . 기업소득세에서는 외자계기업 독자 소득세법이 있지만 개인소득세에서는 외국인도 개인소득세법이 적용됨. 단지 외국인에 대한 기초공제액(월액)은 4,800위안이 인정되고 있음. 이에 따라 외국인에 유리하게 적용된다는 견해도 있음

<임금·급여소득에 적용되는 개인소득세율>

	과세소득	세율(%)
1	500위안 이하	5
2	500위안 초과 2,000위안 이하	10
3	2,000위안 초과 5,000위안 이하	15
4	5,000위안 초과 20,000위안 이하	20
5	20,000위안 초과 40,000위안 이하	25
6	40,000위안 초과 60,000위안 이하	30
7	60,000위안 초과 80,000위안 이하	35
8	80,000위안 초과 100,000위안 이하	40
9	100,000위안 초과	45

자료원 : 개인소득세법

주 : 과세소득은 기초공제액 1,600위안을 공제한 잔액 또는 추가 공제비용을 공제한 잔액

☐ 최근 동향 및 향후 전망

○ 개인소득세법 개정

- 2006년 1월부터 개정 개인소득세법이 시행됨. 1980년에 제정된 개인소득세법은 1993년, 1999년에 개정된데 이어 이번 3차 개정시에는 종래 800위안이었던 매월 기초 공제액이 1,600위안으로 상향 조정됨
- 외국인에 대해서는 여기에다 3,200위안이 추가되어 종래는 4,000위안(800위안+3,200위안)이 공제됐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4,800위안(1,600위안+3,200위안)이 공제됨
- 기초공제액의 인상은 중·저소득층에 대한 세 부담 경감이 주된 목적임. 세 부담 경감에 따라 소득격차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는 동시에 소비를 자극한다는 의도에 기초하고 있음
- . 2004년 중국의 평균 연수입은 1만 6,024위안(평균 월 1,335위안)으로 이번 법 개정으로 현행의 납세자 중 대부분이 면세혜택을 볼 수 있게 됨

○ 고소득자에 대한 징수관리 강화

- 중국 당국은 저소득자에 대한 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고소득자에 대한 개인소득세 징수관리를 강화하고 있음
- .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2004년 3월 『외국적인원의 개인소득세징수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加强外籍人员个人所得税征管工作的通知)』를 공고함. 이 통지는 2004년 6월까지 외국인이 자기신고에 의한 미 납세액을 납부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 기한내에 수정 신고한다면 체납금(1일당 0.05%)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어 대부분의 외자계기업이 수정 신고를 하고 있음
- 또한 2005년 10월부터 『개인소득세관리방법(个人所得税管理办法)』을 시행함. 동 방법에서는 세무당국이 생년월일이나 근무처 등 외국인의 개인정보를 파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또 금융기관이나 첨단기술기업 등지에 근무하는 고소득자를 중점납세자로서 추출해서 징수관리하는 방침을 정하고 있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종업원도 중점관리 대상으로 하는 것이 명시되고 있음
- . 중국정부는 외국인은 유동성이 높고 개인소득세 신고 및 납세를 잘 누락시킨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외국인 개인소득세의 징수강화는 향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세무당국이 파악하는 외국인의 개인정보>

납세자번호, 서명, 성별, 생년월일, 중국외의 주소, 국적, 신분증명서의 종류·번호, 거류증허가번호, 노동취업증번호, 취업, 중국에서 직무, 중국외에서의 직무, 입국일시, 재직기한, 예정체재기간, 예정출국일시, 중국에서의 근무처명 및 세무등기번호, 전화번호, 중국외의 파견처명, 소재지, 임금지불지, 중점납세자 해당 여부

○ 개인소득세 징수관리 강화 움직임에 대응

- 현재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중국 세무에 대한 초미의 관심은 중국정부의 개인소득세와 이전가격세제에 쏠려있음
- . 특히 작년 잇달아 발표한 개정 『개인소득세법』 및 『개인소득세법 실시세칙』, 『개인소득세관리방법』에서는 외국인 및 외자계기업에 근무하는 고소득자에 대한 중점관리를 명시하고 있어 과세 산출을 정확하고 신중히 할 필요가 있음
- . 과세신고내역에 문제가 있으면 추징과세에 덧붙여 체납금 및 벌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함. 특히 다음 두 가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파견자의 급여 처리

- 파견자의 급여에는 중국의 현지법인 뿐만 아니라 본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음 이러한 경우 쌍방의 급여가 중국에서 과세대상이 됨
- 중국 진출법인에 대한 한국 모회사의 기술공여는 한국으로부터 기술자 파견방법(기술자의 용역제공에 대한 보수)과 라이선스계약에 의한 로알티방법(매출액의 일정율에 근거)이 있음
- . 기술자파견 계약 : PE로 인정되어 기업소득세, 영업세 및 개인소득세 과세
- . 라이선스계약에 의한 기술이전 : 로알티수입에 대해 원천세 및 영업과세

- ☞ 기술용역제공자가 장기출장(183일 초과)시는 PE로 인정되어 개인소득세 이외에도 외자기업소득세, 영업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장기출장시는 중국 자회사로 발령내는 것이 바람직 함. 이 경우 기술자는 중국자회사의 직원으로 인정되어 개인소득세만 납부하면 됨

<기술공여시 과세내역>

기술공여방법	기술자 파견	노하우 공여를 위한 기술자 파견
라이선스 계약과의 관계	無	라이선스 계약의 일부
과세	PE과세	로알티 收入과세
과세세목	. 외자기업소득세 (추정이익과세 10~30%) . 영업세(5%) . 개인소득세	. 원천징수(10%) . 영업세(5%)
기타	납세신고수속 복잡	원천징수이기 때문에 수속 간편

자료원 : 중국투자 신전략(kotra, 2004년)

○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인정시 개인소득세 과세

- 중국에서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되면 과세대상이 되는데, 기업소득세 뿐만 아니라 개인소득세도 납세의무가 발생함. 통상적으로 출장자의 중국 체재기간이 연 183일 이내라는 조건을 분명히 한다면 면세가 되지만,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된다면 1일 체재시에도 납세해야 함.

<고정사업장 개념 및 대상>

개념	- 중국 국내에서 실질적인 영업행위를 하는 비거주자의 거점, 비거주자가 중국내에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을 보유하면 사업소득에 대해 중국에서 과세됨
대상	- 중국에서 PE 보유 · PE에 대해 외자기업소득세, 영업세가 부과되며 관련자에 대해서는 183일 이하 체류시도 개인소득세가 부과됨 - PE로 간주 · 중국내에서 연속 6개월을 초과하여 용역제공활동을 행한 경우, 사업거점을 보유하지 않고 출장으로 업무를 수행했다 해도 고정사업장(PE)을 보유하여 이윤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과세됨. 예를 들어, 기술용역제공자의 파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는 PE를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어 외자기업소득세, 영업세 및 개인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됨

자료원 : 중국투자 신전략(kotra, 2004년)

<PE 인정 유무에 따른 과세 비교>

구 분	PE 미인정	PE 인정
외자기업소득세	비과세	과세(추정이익 10~30%)
영업세	중국 국내거래 : 과세	중국 국내거래 : 과세
	중국 국외거래 : 비과세	중국 국외거래 : 비과세
개인소득세	중국 비거주자(한국거주자)로 183일 이내 체재시 비과세	중국 비거주자(한국거주자)라 해도 183일 면세규정 적용이 안됨

자료원 : 상동

4. 증치세(增值稅)

□ 증치세 개요

- 증치세는 한국의 부가가치세에 해당되는 것으로 세율은 원칙적으로 17%이지만 농업, 화학비료, 신문잡지 등 일부 품목에는 13%가 적용됨
- 증치세 납부액은 매출세액(매출액 x 세율)에서 매입세액(매입세 x 세율)을 공제해 산출한 금액임
- 중국에서는 인보이스 방식이 채택되어 매입자로부터 전용영수증을 입수하지 않으면 공제할 수 없음. 증치세중 수출 매출에 관한 부분은 면세 취급되며, 매입분의 증치세는 환급됨. 또 수입시에도 증치세가 부과됨

□ 증치세 현황 및 전망

- 중국의 증치세는 생산형 증치세임. 이는 재고자산에 대해서만 매입 공제를 인정하는 방식임. 중국이 생산형(生產型) 증치세를 도입하게 된 것은 증치세를 제정한 1994년 당시 고정자산투자를 억제하면서 세수를 확보해야 하는 중국의 경제상황에 따른 것임
- 반면, 재고자산 이외에 고정자산에 관한 증치세 공제도 인정하는 방식을 소비형(消費型)증치세라 함. 중국 재정부 및 국가세무총국은 중국 동북지역의 노후공업지역의 투자활성화를 통한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2004년 9월 『동북지방에서의 증치세 공제 범위 확대에 관한 문제에 대한 규정(東北地區擴大增值稅抵口範圍若干問題的規定)』을 공포하여 고정자산에 대한 매입증치세를 공제하는 소비형증치세를 실시하고 있음
- 규정에 따라 2004년 7월부터 동북지방 3성의 설비제조업, 석유화학공업, 야금업, 선박제조업, 자동차제조업, 농산물가공업, 군용품제조업, 첨단기술산업 등 8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 소비형 증치세가 시범적으로 도입됨

- 소비형 증치세의 시험도입은 동북지역의 진흥을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이 통지에 따라 4만개 이상의 기업이 소비형 증치세율을 적용받았으며 2005년 총 공제누계액이 약 50억위안을 넘어섬
- 국가세무총국은 동북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소비형 증치세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인식하고 앞으로 소비형 증치세를 전국적으로 도입할 것을 검토하고 있음
- 그러나 증치세는 총 세수액의 50%를 차지하는 가장 큰 수입원으로 중국 당국은 세수 감소액 등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신중하게 증치세 개혁을 실시할 것으로 예측됨

□ 수출증치세 환급을 인하

- 『중국증치세잠정조례(中華人民共和國增值稅暫行條例)』 규정에 의하면 수출품 관련 매입증치세는 형식적으로 환급절차를 거치나 결국 면세 처리됨
- 그러나, 최근 중국정부가 '수출증치세 환급' 관련 통지를 잇달아 발표하여 품목에 따라 환급율을 조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전액 환급되는 경우는 적다고 할 수 있음
- 2005년 발표된 환급율의 조정 내역을 보면 1월부터 일부 철·알루미늄·니켈 제품 등 오염유발, 에너지 다소모형 제품은 수출증치세 환급이 철폐되고, 집적회로·이동통신기지국 등 첨단관련제품의 환급율은 13%에서 17%로 상향 조정됨
- 4월부터는 일부 철강제품과 화학비료의 환급이 철폐되고 5월부터는 마그네슘이나 석탄제품 등 에너지 다소비형·환경오염형·자원관련품목 환급율이 인하·철폐됨
- 올 1월 1일부로 수출증치세 환급이 취소되는 제품은 콜타르, 생피, 생모피, WET BLUE, WET 가죽, EMBRYO LEATHER 등임

- 25종의 농약품종, 분산, 염료, 수은, 텅스텐, 아연, 주석, 안티몬 및 제품, 금속마그네슘·초급제품, 류산-2Na, 파라핀제품을 수출할 경우 환급율은 5%로 하향 조정됨
- 이러한 일련의 정책은 과열기조를 보이고 있는 거시경제를 조정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계속 중국 경제·산업동향 변화에 따라 수출증치세의 환급율은 탄력적으로 변경될 것으로 예측됨.
- 따라서 중국내 가공무역에 종사하는 투자기업들은 수출증치세를 인하로 인한 기업의 경영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생산비용 절감 노력, 브랜드 이미지 제고 등 기업의 경쟁력을 높힐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2004년 수출증치세 환급율 업종별 조정 내역>

구분	업 종	종전(%)	2004년 1월(%)
환급 폐지	원유	13	0
	종이펄프	13	0
	원목	5	0
환급률 인하	전기제품	17	13
	의류	17	13
	강재	15	13
	완구	15	13
	화학섬유	15	13
환급률 변경보류	농산물, 농산가공품	5~13	5~13
	선박, 자동차 및 그 부품	17	17
	업종별 평균	15	12

자료원 : 중국투자 신전략(kotra, 2004년)

☐ 수출증치세 환급 지연

- 수출증치세는 수출후 관련 증빙서를 세관에 제출하면 환급된다고 하지만, 환급이 늦어지거나 또는 거의 환급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물론, 중국정부가 2004년 1월 『현행의 수출증치세 체제 개혁에 관한 결정』 공표를 계기로 2003년 이전에 발생한 증치세의 누적 미환급분에 대해서는 중국정부가 부담·반제하기로 결정하는 등 수출증치세의 원활한 환급을 위해 미완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아직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수출증치세 적시 환급 요청을 채워주기에는 역부족
- 이는 중국정부가 수출증치세 환급을 위한 별도 예산을 배정하고 있으나 지역마다 지방재정상태 등 여건이 상이하여 환급의 우선 순위와 운용방법에 있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임. 상황에 따라서는 수출 환급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고 해를 넘기는 경우도 많음
- 한편, 중국세무총국은 2004년 초에는 2,421억위안에 달하는 수출증치세의 미환급금이 있었지만, 2005년 11월말까지에는 3,017억위안이 환급하여 새로이 발생하는 미환급분은 없다고 발표

<10·5계획 기간중 수출증치세 환급 내역>

- ◇ 9·5기간과 비교시 10·5 기간 중국의 동부, 중부, 서부지역의 수출증치세 환급 증가율은 각각 3.1배, 1.6배, 1.6배로 모두 1.5배 이상을 기록
- ◇ 중국 동부지역의 수출증치세 환급액은 1조 519억 1천만달러로 중국 전체 수출증치세 환급총액의 90%를 차지
 - 지역별 수출증치세 환급 내역
 - . 광둥(2,275억 3천만달러), 저장(2,034억 4천만달러),
 - . 장쑤(1,688억 1천만달러), 상하이(1,411억 만달러)
- ◇ 중서부지역 수출증치세 환급액은 805억 9천만달러, 619억4천만달러로 9·5기간에 비해 23.5%, 23.6% 증가
 - 지역별 수출증치세 환급 내역
 - . 안후이(155억 9천만달러), 후난(121억 1천만달러), 허난(119억 9천만달러),
 - . 후베이(119억 1천만달러), 쓰촨(119억 5천만달러), 산시(107억 7천만달러)
- ◇ 국유기업, 집체사영기업, 외국인투자기업, 주식제기업 및 기타기업의 수출환급액은 전체의 26.4%, 8.6%, 39.4%, 25.1, 0.5%를 차지
 - 9·5기간과 비교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출증치세 환급액은 353억 7천만달러에서 1,480억 5천만달러로 점유비중이 33%에서 43.9%로 증가함

자료원 : 중국세무총국

□ 소규모납세자 처리

- 증치세의 납세자는 소규모납세자와 일반납세자로 분류됨. 연간 매출액이 생산기업은 100만위안 이하, 상업기업이 180만위안 이하인 경우 소규모납세자로 분류됨
- 일반납세자는 이러한 매출조건을 구비해야 하고 세무당국의 인가를 얻

어야 함. 실제 매출액이 조건에 맞지 않다 하더라도 예상 매출액이 이 금액에 부합한다면 인가를 얻는 경우가 많음

- 일반납세자 경우 세율은 원칙적으로 17%(일부 13%)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음.
- 한편, 소규모납세자의 세율은 6%로 일반납세자보다 세율이 낮음. 그러나 매입세액 공제는 인정되지 않고 매출세액을 그대로 납부하고 또 전용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음
- 이 때문에 일반납세자가 소규모납세자로부터 제품을 매입한 경우 매입선인 소규모납세자로부터 영수증을 입수할 수 없기 때문에 당해 금액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게 됨
- 결과적으로 소규모납세자와의 거래는 자사에 불리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규모납세자와의 거래를 좋아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 증치세 부담에 대응

- 17%의 높은 세율, 수출증치세의 환급 지연 등은 진출기업의 자금조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
- 이 때문에 수출증치세의 환급상황을 개선하고 향후 소비형 증치세의 전역 확대 실시 등을 검토하는 중국정부의 증치세 개선정책은 외자계기업에 대해 유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보임
- 증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매입공제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증치세의 매입공제를 위해서는 매입선으로부터 전용영수증을 입수하는 것이 필요함. 실제 중국은 2005년 9월에 『증치세 전용영수증 관리를 강화하는 건에 관한 문제에 대한 통지』가 공표하는 등 증치세 영수증 관리에 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음
- 회사내에 영수증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매입공제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탈세행위로 간주되어 중국 당국으로부터 추징
과세나 체납금 납부를 요구받을 수 있음. 중국 진출기업은 관련 법규를
충분히 숙지하여 증치세 전용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

- 구체적으로는 거래선으로부터 전용영수증을 입수하면 거래선이 일반납
세자인가 소규모납세자인가를 파악하는 것과 자사가 일반납세자로서 인
정을 받는 것이 중요함
- 중국에서는 위조영수증이 돌아다니고 있어 위조영수증을 취득하면 벌금
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주의가 필요함
- 한편, 외자계기업이 중국산 설비를 구입하는 경우, 구입액에 부과되는
증치세액이 환급되는 등 특별 규정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을 충분
히 활용하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음

5. 세무조사

☐ 세무조사 개요

- 중국에서는 1994년 세제 개정 이후 ‘분세제(分稅制)’를 채택하고 있음.
분세제는 지방정부의 세무국이 징세를 하고 그 일부를 중앙정부에 상
납하는 제도임
- 중국의 세목은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되며, 국세는 국가세무총국이 지방
세는 지방세무총국이 징수를 하고 있음
- . 국세는 증치세, 기업소득세, 소비세 등이 있으며, 지방세에는 개인소
득세, 영업세, 인지세, 토지증치세, 차량선박세 등이 포함됨
- . 세무조사는 국가세무총국, 지방세무총국이 각각 관리하는 세목에 대
해 실시함. 세무당국의 세무조사 권한은 『세수징수관리법』에 의해
규정돼 있음

○ 세무총국이 실시하는 세무조사는 크게 3 단계로 분류됨

- 첫 번째는 일상조사로 이는 납세자의 세무신고상황에 따라 일상적으로 실시하는 조사임
 - . 컴퓨터를 이용해서 업종별 경영지표나 세목별 납세상황을 분석하여 이상한 점을 체크하여, 발견한 납세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함
- 두 번째는 특정항목 조사로 이는 특정의 납세대상·업종·세목 등에 대해서 실시하는 전문적인 조사임. 시나 현, 구 등 몇몇의 세무당국이 공동으로 조사하는 경우도 많음
 - . 특정 세목조사 예로는 영수증 조사, 개인소득세 조사, 유통세 조사 등이 있음. 또한 금융업 등 업종별로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국적으로 기업의 중요도를 정해서 세무조사를 하고 있지는 않음
- 세 번째로는 고발조사로 고발자에게는 실제 추정세액의 5%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중국에서는 고발이 장려되고 있음
 - . 광저우시 지방세무국의 관계자에 따르면 광저우시에서는 연간 1,000~2,000건의 고발이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함. 내부·외부고발 등이 있지만 '반드시 모두가 사실이 기초한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세무조사는 법률에 기초한 절차에 따라 실시됨. 구체적으로는 일상조사를 실시할 때 기업에 사전 통지를 함⁸⁾
 - . 조사시에는 세무조사 증명서를 제시하고 조사관 2명 이상이 실시함. 추정과세 기간은 세금 누락이 실수였다면 3~5년, 고의였다면 무기한을 적용함. 벌금은 형법, 『세수징수관리법』에 따라 미납액의 50%~5배의 벌금을 적용함

8) 원칙적으로 사전통지를 하고 있지만 내부고발 조사의 경우 사전 통지가 세무조사에 장애가 될 것으로 판단할 경우 사전 통지를 하지 않고 있음

- 세무당국이 세무조사를 한 후 추정과세를 결정한 경우 납세자(기업)는 불복신청 권한이 있음
- . 구체적으로는 상부 세무당국에 행정불복신청, 재판을 하는 행정소송 등 2가지 방법이 있으나 실제로 불복신청을 하는 경우는 매우 적음
- . 이전가격과세와 동시에 세무당국의 결정을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임

□ 세무조사 대응요령

- 세무조사에는 법규에 따른 적정한 세무신고를 하는 것이 최대의 대응요령임. 중국 진출 외국인기업들 중에는 신고금액을 잘못 계산하여 사후에 추정세금을 부과받는 경우가 많음
- 적절한 세무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내 세무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임. 우선 경리담당자는 중국 회계·세무에 정통한 인원을 배치해야 함
- 국가마다 세무·회계제도에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경리담당자가 중국의 회계·세무에 능숙한 인재가 아니면 착오를 범하기 쉬움
- 또한 중국 독자의 내부고발제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내의 기밀유지에 관한 체제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함. 필요에 따라서는 전문회계사무소로부터 매월 감사를 받는 등 컨설팅 회사로부터 시의적절하게 자문을 받는 것도 필요함
- 이외에 중국의 국가세무총국, 지방세무국은 ‘대외처’ 상담창구를 두고 외자기업의 문의사항에 응답하고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

<세수징수관리법에 규정된 벌금·벌칙 내역>

내 용	벌금·벌칙	규정
규정의 기한대로 세무등기·변경등기·말소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 세무기관이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하고 2,000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	제60조
규정에 기초한 장부나 기장증빙, 관계자료를 보관하지 않는 경우		
규정에 기초하여 재무회계제도나 회계처리 방법, 회계처리소프트를 세무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규정에 기초하여 모든 은행계좌번호를 세무기관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규정에 기초하여 세금관리장치 설치·사용하지 않거나 그 장치를 파괴하여 수고로움을 더할 경우		
규정의 기한대로 납세신고·납세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상황이 심각할 경우는 2,000위엔 이상 1만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	제62조
규정의 기한대로 원천징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규정대로 세무등기증명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 2,000위엔 이상 1만위엔 이하의 벌금 부과	제60조
세무등기증명서를 전대, 개정, 파괴, 매매, 위조한 경우	- 상황이 심각한 경우 1만 위 엔이상 5만위엔이하의 벌금	
규정대로 세무등기증명서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세무기관이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하고 2,000위엔 이하 벌금을 부과 - 상황이 심각한 경우 2,000 위엔 이상 5,000위 엔 이하 벌금 부과	제61조
규정대로 원천징수에 관한 장부,관계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경우		

내 용	벌금·벌칙	규정
장부·기장증빙을 위조·변조·은폐·무단 폐기하는 경우	- 미납부액 및 체납금을 추징하고 미납액의 50%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 -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형사책임을 추궁	제63조
장부·기장증빙에 지출의 과대계상, 수입의 과소계상, 미계상을 한 경우		제64조
세무기관의 신고통지를 받아도 통지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하거나 또는 과소납부를 하는 경우		제65조
재산이전, 은폐로 세무기관의 추징을 방해한 경우		
허위 세액계산자료를 작성한 경우	세무기관이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하고 5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제64조
허위 수출보고 등에 의해 수출세 환급세액을 착취한 경우	- 착취세액의 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부과 -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는 형사책임을 추궁	제66조
폭력·협박에 따라 납세를 거부한 경우	- 미납부액 및 체납금을 추징하고 형사책임을 추궁 - 상황이 가벼울 경우 납세거절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부과	제67조
규정의 기한대로 납세하지 않거나 과소납부에 따라 추징납부를 명해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물품의 차압 등 강제집행조치를 강구하는 것 외에 미납액의 50%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부과	제68조
납세자가 징수·수령해야 하는 세금을 징수·수령하지 않는 경우	미납액의 50%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제69조
도피·거절 등으로 세무조사를 방해한 경우	- 세무기관이 시정을 명하고, 1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 상황이 심각한 경우 1만원 이상 5만원의 벌금 부과	제70조

내 용	벌금 · 벌칙	규정
위법의 수령서를 인쇄 제조한 경우	영수증을 폐기하고 사용한 기구를 몰수해서 1만위엔 이상 5만위엔 이하의 벌금 부과	제71조
조세위법행위가 있고 세무기관의 처리를 거절한 경우	영수증 회수, 신규발행 폐지	제72조
납세자의 금융기관이 세무조사나 세무기관이 제출한 예금동결 지시 등을 거절한 경우	- 금융기관에 10만위엔 이상 50만위엔 이하의 벌금 부과 - 직접책임자에는 1,000 위엔 이상 1만위엔 이하 벌금 부과	제73조

자료원 : 『중국세수징수관리법』 (2001년 4월 공포)

Ⅲ. 시사점

1. 중국의 세제 정책 및 시스템 변화 이해

☐ 세제 개편

- 중국은 1994년 공상세제(工商稅制) 개혁시 23개로 분류됐던 세제를 삼농정책(三農政策, 농민, 농업, 농촌지원 정책)활성화를 통한 농민의 수입증대를 위해, 그동안 농민에 대해 부과했던 농업세, 목축업세, 도축세 등 농업세류를 폐지하여, 현행 20개 세제 실시

- 농업세, 목축업세, 도축세 : 2006년 2월 27일 폐지

☐ 2005년 세수액 전년동기 대비 20% 증가

- 세수액면에서 2005년에는 전년동기 대비 20% 증가한 3조 866억위안을

확보하여 10년 전보다 5.2배 확대됐으며, 이중 간접세인 증치세의 비중이 최대 세수원으로 전체 세수의 50%를 차지하고 있음

- 반면, 직접세 비중은 미국(90%), 일본(60%), 한국(43%) 등 국가보다 낮은 30% 정도에 그치고 있음
- 일반적으로 경제가 발전할수록 직접세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연 평균 9%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중국에서는 간접세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정책에 의한 경기진작효과가 적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중국이 국내외기업 소득세 통일화와 외자계기업에 대한 이전가격세제 조사 강화를 통해 세수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중국 현지법인의 경영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중국의 세제시스템 및 환경변화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2. 세무리스크 점검을 통한 대응책 마련

☐ 이전가격세제

- 이전가격세제는 해외의 관련기업과 거래가격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중국진출기업과 모기업간의 이전가격을 통상적인 거래가격(독립적인 가격)으로 과세함
- 이전가격조사는 1990년 가공무역기업이 많이 진출한 선전(深圳) 등지에서 시작됐는데 최근에는 선전을 위시한 화난(華南)지역뿐만 아니라 전문세무조사관들이 전국적으로 이전가격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전가격세제는 중국 내자기업에도 적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외국인투자기업을 타겟으로 실시하고 있어, 한국의 대중국 투자기업중 상당수 기업이 모두 이전가격과세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음

- 특히 중국정부는 향후 기업소득세의 통일화로 인한 외자계기업의 실질적 세율 상승이 중국진출기업의 해외 모기업으로의 이익이전이 더욱 가속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이전가격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할 것으로 보임
- 또 이전가격세제는 기업이 소득을 해외에 이전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과세되고, 중국 세무당국은 서면조사 뿐만 아니라 현장실사나 추가자료 제출 요구 등 돌발적 조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자간 거래를 하는 중국 진출 한국기업들은 이전가격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외에 자료 제출기한이 단기간이고 조사대상 기업으로 일단 조사통보를 받고 대응하면 시기를 놓치기 쉬우므로 다음과 같이 사전 대응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 이전가격세제 적용으로 인한 비용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함
 - 모기업·중국자회사 거래가격의 적정성 여부 사전 평가
 - 동종 타사의 이익수준 정보 입수 등 벤치마킹 작업
 - 모기업 주도하에 중국내 자회사 전체 대상의 대응전략 수립
 - 관련기업간 가격리스트 합의서 사전 작성
 - 로얄티 등 모기업에 대한 지불금액의 객관적인 입증자료 마련
 - 세무당국과의 양호한 관계 구축
 - 세무전문가의 자문 활용
 - 사전가격합의제도(Advance Pricing Agreement) 신청 검토

□ 기업소득세

- 현재 중국 내자기업이 통상적으로 33%의 기업소득세율을 적용받는 것과 달리 경제특구와 경제기술개발구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은 각각 15%, 24%의 우대세율 혜택을 받고 있음
- 그러나 중국의 WTO 가입후 국내외 기업간 기업소득세율 불평등 철폐를 통한 중국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외자기업으로부터 세수 확보를 통

해 중국의 재정적자를 메운다는 목적하에 기업소득세 통일화를 추진하고 있음

- 통일화된 기업소득세율은 2007년 양회(兩會)개최기간에 표결에 부치고 빠르면 2008년에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우대세율 철폐 가능성을 예측하여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있으며, 새로 진출할 기업들은 세제 우대메리트를 제외하고 사업타당성을 조사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또 현행의 기업소득세 우대조치는 지역(경제특구, 경제개발구, 연해개발구 등)에 한정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지역별 우대보다 산업별 우대조치 정책을 취할 것으로 보여 중국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 중 '장려산업종류'로 투자방향을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
- 이에 따라 신규 진출기업 입장에서는 지방정부의 일방적인 말보다는 중국 전체의 정책의 흐름을 감안하여 산업분야와 진출지역을 선정해야 할 것임

□ 개인소득세

- 2006년 1월 1일 개정 시행되고 있는 개인소득세법은 종래 800위안이었던 매월 기초 공제액이 1,600위안으로 상향 조정됨. 이에 따라 외국인은 총 4,800위안을 공제받게 됨
- 개정 개인소득세법은 저소득층에 대한 세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고소득자에는 개인소득세 징수관리 목적을 갖고 있음
- 특히 중국세무총국은 『외국적인원의 개인소득세징수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와 외국인이 자기신고에 의한 미 납세액을 납부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등 외국인의 개인정보를 파악하는 법률을 정비하고 있음
- 여기에는 금융기관이나 첨단기술기업 등에 근무하는 고소득자를 중점납세자로서 추출해서 징수관리하는 방침과 외국인투자기업의 종업원도 중점관리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어 개인소득세 과세 산출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수출증치세 환급율 하향 조정 및 지연 대책

- 중국은 2004년 수출증치세 환급율을 평균 12%로 인하 조정하고 2005년에는 철·알루미늄, 니켈제품 등 고오염, 에너지 다량 소모 제품은 수출증치세 환급율 철폐한 반면, 집적회로·이동통신기지국 등 첨단관련제품의 환급율은 13%에서 17%로 상향 조정됨
- 이러한 일련의 정책은 현재 과열기조를 보이고 있는 거시경제를 조정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중국의 경제·산업동향 변화에 따라 수출증치세 환급율이 탄력적으로 변경될 것으로 예측됨
- 수출증치세는 수출후 관련 증빙서를 세관에 제출하면 환급된다고 하지만 환급이 늦어지거나 또는 거의 환급을 받지 못하는 기업도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수출증치세 환급율 조정 추이를 주시하여 투자업종을 선정하고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에 따라 수출증치세 환급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기업의 운영자금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임
- 또 증치세의 매입공제를 위해서는 매입선으로부터 전용영수증을 입수하는 것이 필요함. 왜냐하면 회사내에 영수증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매입공제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탈세행위로 간주되어 중국당국으로부터 추징과세나 체납금 납부를 요구받을 수 있음. 이에 따라 중국진출기업은 관련법규를 충분히 이해하여 증치세 전용관리에 신경을 써야 함

□ 세무조사 강화 대비

- 중국 세무당국이 최근 외국인투자기업들이 탈세를 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세무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데, 실제 중국진출 외국인투자기업중에는 세무신고 내역을 잘못 신고하여 사후에 벌금 및 추징세금을 부과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보통 세무조사는 일상조사, 특정항목조사, 고발조사 등 3단계로 진행되는데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법규에 따른 적절한 세무신고가 최대의 대응책임
- 적절한 세무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중국 회계·세무에 정통한 직원을 경리담당자로 뒤편함. 또 필요에 따라 회계사무소 및 컨설팅사무소로부터 매월 세무신고 관련 준비서류와 세무조사시 대처방안 등 자문을 받는 것이 세무 리스크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음
- 또 이외에 중국의 국가세무총국, 지방세무국이 ‘대외처’라는 창구를 통해 외자기업의 세무에 대해 상담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추후 발생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음